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8호 2023. 11. 29.(수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610호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3
○ 하동군 조례 제2611호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612호 하동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 • • • • 10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67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99호 어촌뉴딜300사업(송문항) 시행계획 1차(토목 분야) 수립 고시 • • • 16
○ 하동군 고시 제2023-200호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중대한변경) 고시(수정) 20
○ 하동군 고시 제2023-203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26
○ 하동군 고시 제2023-204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 • 27
○ 하동군 고시 제2023-207호 공유수면 점용(변경) 허가 고시 • • • • • • • • • • • • 28
○ 하동군 고시 제2023-20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 • • • • • • • • • • • • 29
○ 하동군 고시 제2023-21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33
○ 하동군 고시 제2023-21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알림(타용도전용) • • • • • • • 34
○ 하동군 고시 제2023-213호 공유수면 점용(변경) 허가 고시 • • • • • • • • • • • • 36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466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 • • 37
○ 하동군 공고 제2023-1496호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42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469호 지적재조사 고전 시목노화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 • • • 47
○ 하동군 공고 제2023-1470호 지적재조사 악양 상신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 • • • • 49
○ 하동군 공고 제2023-1482호 지적재조사 적량 동촌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 • • • • 51
○ 하동군 공고 제2023-1484호 보상계획 공고(화개천 재해복구사업) • • • • • • • • • • 53
○ 하동군 공고 제2023-1503호 화개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 • • • • • • • • 56
○ 하동군 공고 제2023-1512호 하동군 금고지정 공고 • • • • • • • • • • • • • • • • • 58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10 호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장애인 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연계 지원
4.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6.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
7. 장애인복지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평가·자문

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때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11 호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출자·출연의 동의)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의 보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군수와 협의하는 경우 군수는 정관의 작성 및 변경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출자・출연의 동의)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7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의 보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군수와 협의하는 경우 군수는 정관의 작성 및 변경

현 행	개 정 안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12 호

하동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취업희망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선권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신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67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0.7km”를 “0.6km”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읍면장에 추전에 의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 ---------- ---------- ---------- ----------.
1.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0.7km이상 떨어진 마을	1. ---------- -------0.6km이상----------
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2.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고시 제2023 - 199호

어촌뉴딜300사업 (송문항) 시행계획 1차(토목 분야) 수립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어촌뉴딜300사업(송문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 1차(토목분야)를 아래와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송문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개선
   ○ 어업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어업환경개선
   ○ 인접한 노량항 및 노량대교와 연계한 체류형 어촌관광 거점화 구축

3. 사업위치 :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송문항 일원 (송문항)

4.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간)

5. 총사업비 : 5,508백만원(국비 3,855.5, 지방비 1,652.5, 자부담 143.4)

6. 사업내용

구분	기본계획 (‘22.12.28)	시행계획 (1차) (‘23.11.14)	시행계획 (잔여_설계중)	비고
공통 사업	- 송문항 선착장정비 - 어구보관창고 조성 - 부잔교 설치	- 송문항 선착장정비	- 어구보관창고 조성 - 부잔교 설치	
특화 사업	- 해상글램핑장 조성 - 안전편의시설정비 - 마을안길 조성 - 갯벌따라길 조성	- 안전편의시설정비 - 마을안길 조성 - 갯벌따라길 조성	- 해상글램핑장 조성	
S/W 사업	- 역량강화 - 지역협의체 운영 등	-	- 역량강화 - 지역협의체 운영 등	
기타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7.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1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4	잡종지	1,160	1,160	군유지	어구보관창고 조성 천석꾼의 보물어장 조성
2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2	잡종지	462	462	군유지	송문해안로 안전 편의시설 정비
3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13	도로	3,140	3,140	국유지	송문항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4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5	도로	1,689	1,689	시·도유지	
5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74-2	도로	304	304	국유지	
6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75-3	도로	139	139	국유지	
7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02-2	도로	271	271	국유지	

※편입면적 : 실시설계 최종승인 이후 확정

9. 기타사항 : 관련 서류는 하동군청 해양수산과(☎055-880-2444)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055-880-5142)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시행계획 세부내역

구분	기본계획					금회 시행계획(1차)_금회		잔여(검토 및 설계중)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내역 및 사업량(단위)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1 공통사업	어항시설 정비	계류시설	기존 선착장 정비	435.0㎡	218.0	390.1㎡	186.9	-	-	
	어항시설 정비	기타어항 시설	송문항 준설	4,300.0㎥	672.0	-	-	4,300.0㎥	672.0	
	어항시설 정비	계류시설	부잔교 설치	1,011.0㎡	1,799.0	-	-	1,011.0㎡	1,799.0	
	어항시설 정비	기능 편익시설	어구보관창고 조성	99.0㎡	158.0	-	-	99.0㎡	158.0	
	(1) 소 계				2,847.0	-	186.9	-	672.0	
2 특화사업	관광진흥	관광레저	천석꾼의 보물어장 조성	97.9㎡	197.0 <39.4>	-	-	97.9㎡	197.0 <39.4>	
	관광진흥	관광레저	해상글램핑장 조성	2.0EA	520.0 <104.0>	-	-	2.0EA	520.0 <104.0>	
	정주개선	문화복지	송문해안로 안전 편의시설 정비	1식	193.2	1식	259.9	-	-	
	정주개선	주거개선	송문항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1식	85.0	1식	59.9	-	-	
	관광진흥	경관개선	걷기좋은 갯벌따라길 조성	148.0m	104.0	139.0m	139.6	-	-	
	2 소 계				1,039.2 <143.4>		459.4		657.0	
3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교육 등	1식	172.0	-	-	1식	172.0	
		홍보	지역홍보 등	1식	58.0	-	-	1식	58.0	
		컨설팅	운영관리 및 지역활성화 등	1식	40.0	-	-	1식	40.0	
	지역협의체		운영비 및 사무장 채용	1식	72.0	-	-	1식	72.0	
	3 소 계				342.0	-	-		342.0	
4 사업지원	설계비		기본계획	1식	205.0	-	-	1식	205.0	
			실시계획	1식	499.0	-	-	1식	499.0	
	사업관리		공사감리 및 위탁수수료	1식	331.0	-	-	1식	331.0	
	기타경비		인허가 수수료 등	1식	184.8	-	-	1식	138.7	
	4 소 계				1,219.8		-		1,173.7	
총사업비 (1+2+3+4)					5,508.0 <143.4>		646.3		4,861.7	

하동군 고시 제2023 - 200호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대한변경) 고시(수정)

하동군 고시 제2023-142호로 고시된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대한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수정)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개요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개요 및 범위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東光)마을	주거지원형	246.49	2021~2024
	사업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95번지 일원	사업면적	100,000.0㎡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 하동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사업 필요성	▪ 마을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여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 SOC공급과 역사문화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활력 유도			
사업내용 및 효과	▪ 주거환경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 마중물(4개사업), 부처연계(1개사업), 공기업(1개사업)			상세 3 참조
재원조달방안	▪ 마중물 122.07억, 부처 80억, 공기업 33.52억, 기금 10억, 민간 0.9억			상세 5 참조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 마중물 사업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상세 6 참조

활성화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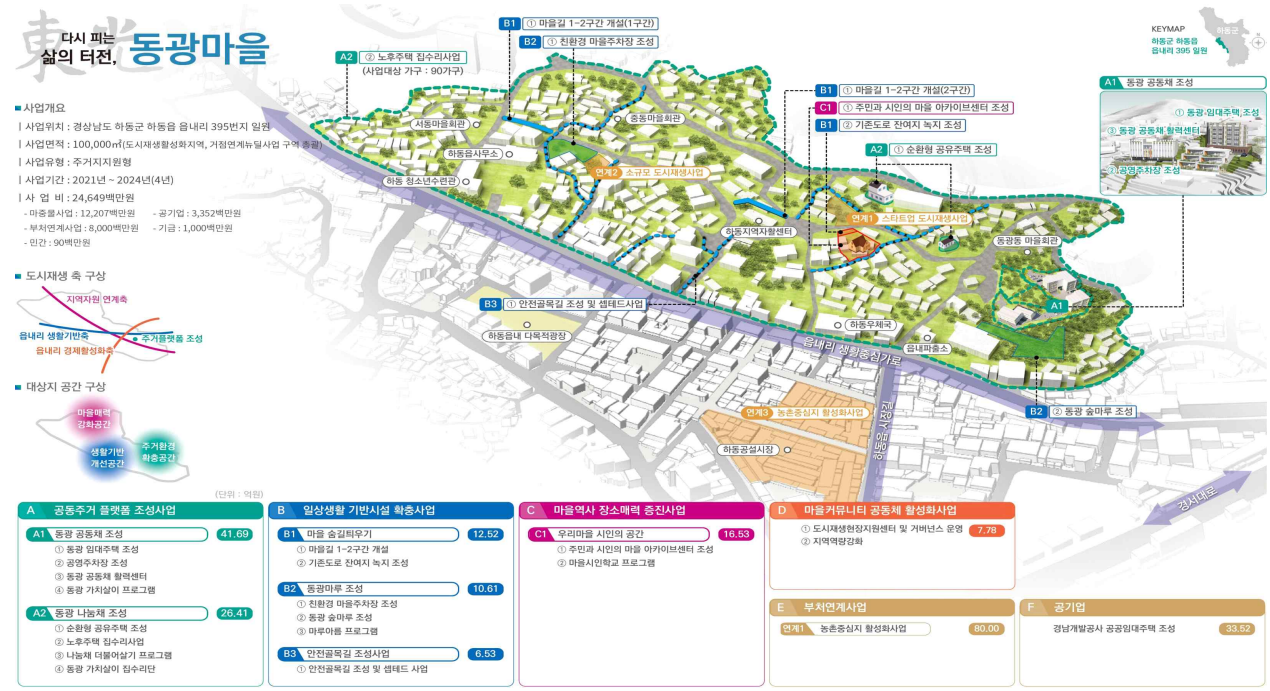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합계			**257.76**	**246.49**		
마중물 사업	**소계**		**기존**	**변경**		
	단위사업	세부사업	133.34	122.07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	동광 공동체 조성	41.69	41.69	H/W	동광 임대주택 조성
					H/W	동광 공영주차장 조성
					H/W	동광 공동체 활력센터(어울림센터)
					S/W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 운영
		동광 나눔채 조성	26.41	26.41	H/W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
					H/W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S/W	나눔채 더불어살기 프로그램
					S/W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	마을숨길 틔우기	13.25	12.52	H/W	마을 1-2구간(자투리숨터)
					H/W	~~산복1길 안전휀스 조성~~**(사업삭제)**
					H/W	기존 도로 잔여지 녹지 조성
					S/W	~~동광마을 마을지킴단~~**(사업삭제)**
		동광마루조성	16.85	10.61	H/W	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사업비 조정)**
					H/W	동광숲마루 조성사업**(사업비 조정)**
					S/W	마루아름(플리마켓)프로그램**(사업비 조정)**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10.83	6.53	H/W	골목환경정비 및 셉테드 사업**(사업 조정)**
					H/W	노인안전보행길 조성**(사업 조정)**
					S/W	~~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사업삭제)**
	마을역사 장소매력 증진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16.53	16.53	H/W	주민과 시인의 마을 아카이브 센터
					S/W	마을시인학교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		7.78	7.78	S/W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S/W	지역역량강화
부처 연계사업	**소계**			**80.0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0.00	· 테마와 경쟁력 있는 농촌발전 거점육성 · 지역간 소통을 위한 시설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	
공기업 사업	**소계**			**33.52**		
	공공임대주택 조성			33.52	· 공공임대주택 22호 공급	
*기금	**소계**			**10**		
	공공임대주택 조성			10	· 동광활력센터 조성 지원	
**민간 투자	**소계**			**0.9**		
	노후주택 집수리 자부담			0.9	·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구분	현황	공급 및 확충 계획	현황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0호 (0세대/355세대)	22호	6.29% (22세대/350세대)
공영주차장 공급	0면	70면	-
빈집 정비	11호	3호	28.00%
불량도로 정비	1,817m	1,817m (마을길개설+펜스설치+골목정비)	100.00%
지역공동체 발굴 (신규)건수	2건	5건	250.00%
노후주택 집수리	-	90호	-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

(단위: 억원, ㎡)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비고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동광공동체 조성	35.30	읍내리 395 외 8번지	공동이용시설 A=580㎡ (마을회관, 어울림센터 등) 공영주차장 A=300㎡	동광임대주택 및 생활SOC 조성	임대주택 22호 / 공기업 참여
도로, 녹지	마을 숨길 틔우기	12.52	읍내리 450-5 외 7필지	도로개설 A=560㎡, 녹지공간 A=123㎡	도로환경 개선	
주차장, 녹지	동광마루 조성	10.61	읍내리 1220 외 10필지	주차장 A=661㎡ 동광숲마루 A=1,064㎡	마을 주차장 및 녹지 조성	사업비 변경
공동이용시설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16.02	읍내리 456-1 외 2필지	아카이브 센터 A=544㎡	아카이브 센터 조성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기존]

구 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	공기업	기금	민간	사업기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방비				
총 합계			**257.76**	**80.00**	**53.34**	**56.00**	**24.00**	**-**	**33.52**	**10.00**	**0.90**	
A~D 마중물 사업	**합 계**		**133.34**	**80.00**	**53.34**	**-**	**-**	**-**	**-**	**10.00**	**0.90**	**'21~24**
	A 공동주거플랫폼 조성사업	공동채	41.69	25.01	16.68	-	-	-	-	-	-	
		나눔채	26.41	15.84	10.57	-	-	-	-	-	-	
	B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마을숨길	13.25	8.95	4.30	-	-	-	-	-	-	
		동광마루	16.85	11.11	5.74	-	-	-	-	-	-	
		안전골목길	10.83	7.19	3.64	-	-	-	-	-	-	
	C 마을역사 장소 매력 증진사업	시인공간	16.53	9.92	6.61	-	-	-	-	-	-	
	D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7.78	1.98	5.80	-	-	-	-	-	-	
E 부처연계 사업	**합 계**		**80.00**	**-**	**-**	**56.00**	**24.00**	**-**	**-**	**-**	**-**	**'16~2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부)		80.00	-	-	56.00	24.00	-	-	-	-	
F 공기업	**합 계**		**33.52**	**-**	**-**	**-**	**-**	**-**	**33.52**	**-**	**-**	**'21~24**
	경남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조성		33.52	-	-	-	-	-	33.52	-	-	
*G 기금	**합 계**		**10.00**	**-**	**-**	**-**	**-**	**-**	**-**	**10.00**	**-**	**'21~24**
	동광활력센터 조성 지원		10.00	-	-	-	-	-	-	10.00	-	
**H 민간	**합 계**		**0.9**	**-**	**-**	**-**	**-**	**-**	**-**	**-**	**0.9**	**'23~24**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0.9	-	-	-	-	-	-	-	0.9	

5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결정(변경)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 전 (최종고시)	예산	변경 후 (금회 변경)	예산	예산 증감	변경/보완 사유	비고
계	-	13,334	-	12,207	-1,127		
변경	**B1. 마을 숨길 틔우기**	1,325	**B1. 마을 숨길 틔우기**	1,252	-73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삭제_산복1길 안전휀스 정비]** · 디자인 펜스 설치하여 안전 확보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해당 지역은 기존 펜스(가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삭제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삭제_동광마을지킴단]** ·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유도하고 위험 및 정비 필요 시설에 대한 관리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사업삭제	사업삭제
	(1) 마을길 1-2구간 개설(H/W) · 하동읍 읍내리 450-5번지 외 5필지 · 규모 560㎡	1,118	(1) 마을길 1-2구간 개설(H/W) · 하동읍 읍내리 450-5번지 외 5필지 · 규모 560㎡	1,118	-		
	(2) 산복1길 안전휀스 정비(H/W) · 규모 213m	37	~~(2) 산복1길 안전휀스 정비(H/W)~~ · 사업삭제	-	-37		
	(3) 기존도로 잔여지 녹지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458번지 외 1필지 · 규모 123㎡	134	(3) 기존도로 잔여지 녹지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458번지 외 1필지 · 규모 123㎡	134	-		
	(4) 동광마을지킴단(S/W) · 동광마을지킴단	36	~~(4) 동광마을지킴단(S/W)~~ · 사업삭제	-	-36		
	B2. 동광마루 조성	1,685	**B2. 동광마루 조성**	1,061	-624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_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 · 당초 경사지형을 완만히 하는 절토식 건축시공으로 기준단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나, 계획(안) 변경되며 구조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사업단가 재책정함에 따라 공사비 절감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_동광 숲마루 조성]** · 기준단가는 유지하되 가용할 수 있는 시설면적 산출하여 공사비 책정함에 따라 사업비 감액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_마루아름 프로그램]** · 기존 프로그램 운영단가 조정을 통한 사업비 감액	사업비 조정
	(1) 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H/W)(마을쉼터) · 하동읍 읍내리 1222-1번지 외 4필지 · 규모 661㎡	1,019	(1) 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H/W)(마을쉼터) · 하동읍 읍내리 1222-1번지 외 4필지 · 규모 661㎡	638	-381		
	(2) 동광 숲마루 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382-3번지 외 3필지 · 규모 1,064㎡	616	(2) 동광 숲마루 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382-3번지 외 3필지 · 규모 1,064㎡	390	-226		
	(3) 마루아름 프로그램(S/W) · 마루아름 프로그램	50	(3) 마루아름 프로그램(S/W) · 마루아름 프로그램	33	-17		
	B3.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1,083	**B3.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653	-430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삭제, 사업통합_안전골목길 조성 및 쉼테드사업]** · 골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므로 사업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사업비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삭제_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 ·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마을 골목길 가꾸기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삭제	사업삭제, 사업통합, 사업비 조정
	(1) 골목길환경정비 및 쉼테드 사업(H/W)	314	(1) 안전골목길 조성 및 쉼테드 사업(H/W) · 골목길 포장 및 정비, LED 보안등, 반사경, 스마트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653	-293		
	(2) 노인안전보행길 조성(H/W) · 안전을 위한 바닥 난간, 담장 정비	632					
	(3) 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S/W) · 육성 및 운영	137	~~(2) 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S/W)~~ · 사업삭제	-	-137		

유지	**A1.** **동광 공동체 조성**	4,169	**A1.** **동광 공동체 조성**	4,169	-	-	변경 없음
	(1) 동광 임대주택 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395번지 외 17필지 · 대지면적 3,317㎡ · 공공임대주택 22세대, 커뮤니티 1개소	1,617	(1) 동광 임대주택 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395번지 외 17필지 · 대지면적 3,317㎡ · 공공임대주택 22세대, 커뮤니티 1개소	1,617	-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 · 주차대수 13대	424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 · 주차대수 13대	424	-		
	(3) 동광 공동체 활력센터 (어울림센터)(H/W) · 연면적 651㎡ · 부설주차장 19대	2,106	(3) 동광 공동체 활력센터 (어울림센터)(H/W) · 연면적 651㎡ · 부설주차장 19대	2,106	-		
	(4)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S/W) ·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	22	(4)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S/W) ·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	22	-		
	A2. **동광 나눔채 조성**	2,641	**A2.** **동광 나눔채 조성**	2,641	-	-	변경 없음
	(1)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462-5번지 외 2필지 · 순환형 공유주택 2동(5호)	1,569	(1)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462-5번지 외 2필지 · 순환형 공유주택 2동(5호)	1,569	-		
	(2)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H/W) · 집수리 90호	900	(2)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H/W) · 집수리 90호	900	-		
	(3) 나눔채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S/W) · 나눔채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	22	(3) 나눔채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S/W) · 나눔채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	22	-		
	(4)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S/W) ·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	150	(4)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S/W) ·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	150	-		
	C1.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아카이브 조성)**	1,653	**C1.**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아카이브 조성)**	1,653	-	-	변경 없음
	(1) 주민과 시인의 마을 아카이브 센터 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456-1번지 외 2필지 · 대지면적 572㎡ · 시설면적 544㎡	1,602	(1) 주민과 시인의 마을 아카이브 센터 조성(H/W) · 하동읍 읍내리 456-1번지 외 2필지 · 대지면적 572㎡ · 시설면적 544㎡	1,602	-		
	(2)마을시인학교 프로그램(S/W) · 마을시인학교	51	(2)마을시인학교 프로그램(S/W) · 마을시인학교	51	-		
	D1.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778	**D1.**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778	-	-	변경 없음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448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448	-		
	(2) 지역역량강화	330	(2) 지역역량강화	330	-		

6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기투입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마중물 사업	국비	-	20.63	26.13	26.48	73.24
	지방비	-	13.76	17.42	17.65	48.83
부처연계		80.0	-	-	-	80.00
공기업		-	-	16.76	16.76	33.52
기금		-	-		10	10
민간		-	-		0.9	0.9
사업비 합계		**80.0**	**34.39**	**60.31**	**71.79**	**246.49**

7 기타사항

ㅇ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ㅇ 열람 장소 : 하동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부서(하동군 군청로 23)

ㅇ 관련 서류 : 열람장소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도시재생부서(☏055-880-2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하동군 고시 제2023-203호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20.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51
2. 허가연월일 : 2023. 11. 20.
3. 점·사용의 목적 : 하천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악양면, 옥종면 일원
   (옥종면 두양리 655-1 외 26필지), 203.6㎡
5. 점·사용의 기간 : 2023. 11. 20.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수(수도사업과)

하동군 고시 제2023 - 20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20.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52
2. 허가연월일 : 2023. 11. 20.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463, 24㎡
   (인근지번 : 금남면 덕천리 451-3)
5. 점·사용의 기간 : 2023. 11. 20.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수(가족정책과)

하동군 고시 제2023-207호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2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53
2. 허가연월일 : 2023. 11. 21.
3. 점·사용의 목적 : 가설건축물(축사)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1039, 89㎡

(인근지번 : 양보면 운암리 908)

5. 점·사용의 기간 : 2023. 11. 21. ~ 2028. 11. 2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김은*
7. 점·사용 변경사항 : 점용 기간 연장

하동군 고시 제2023 - 20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발꾸미길 78외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1.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46-2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발꾸미길 78	20231122	발꾸미라는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28-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37-2	20231122	해안을따라 지나는길이라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339-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소송양달길 53-21	20231122	소송의 양달편 위아래에 있는 마을로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19-7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윗길 66	20231122	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연막윗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15-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43	2023112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15-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41	2023112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15-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39	2023112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15-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37	2023112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15-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35	2023112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15-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33	2023112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15-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31	2023112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728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41-4	20231122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728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41-2	20231122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93	20231122	술상이라는 법정리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7-1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65-1	20231122	술상이라는 법정리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112-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108-2	20231122	해변을 끼고있는 마을의 의미를 유지코자 중평해안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48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수문마을길 124-26	20231122	옛날에는 배를 타고 마을을 출입하여 바다쪽이 마을의 문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596-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173-97	20231122	덕오라는 행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743-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57-41	20231122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83-3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57-6	20231122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 3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38	20231122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 42-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37	20231122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14-1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42-4	20231122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88-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82	20231122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39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40-1	20231122	금성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543-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 57	20231122	섬진강 하류 높은 포구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23-21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24.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54
2. 허가연월일 : 2023. 11. 24.
3. 점·사용의 목적 : 석문마을 원수지 취수보 보강 공사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 47-8, 125.5㎡

(인근지번 : 화개면 운수리 201)

5. 점·사용의 기간 : 2023.11. 24.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수(수도사업과)

하동군 고시 제2023-21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 11. 27.

하 동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4-5종	운봉085	NI52-1-21-085	준보전산지

나.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673-1묘	곤양036	NI52-2-22-03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723-6목	곤양064	NI52-2-22-06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40-2대	하동040	NI52-1-28-040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 서는 하동군청 산림녹지과((☏055-880-248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홈페이지 게첨

[별지 제6호 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 ㎡)

일련번호	변경유형	소재지				면 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1	공익용산지→준보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4-5 종	688.71	688.71	688.71		NI52-1-21-085^운봉085
소계	**공익용산지→준보전**					**688.71**	**688.71**	**688.71**		
2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673-1 묘	97.69	67.82	67.82		NI52-2-22-036^곤양036
3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723-6 목	4,336.58	4,336.58	4,336.58		NI52-2-22-064^곤양064
4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40-2 대	656.67	656.66	656.66		NI52-1-28-040^하동040
소계	**임업용산지→준보전**					**5,090.95**	**5,061.06**	**5,061.07**		
합 계						**5,779.66**	**5,749.77**	**5,749.78**		

<작성요령>

o 7-1-3 유형 :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o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

o 전용용도는 골프장( ), 스키장( ), 산업단지( ), 택지( ) 등으로 작성하고 ( )내는 허가?협의?신고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시) 골프장(협의), 병원(허가), 농가주택(신고)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

하동군 고시 제2023-213호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28.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55
2. 허가연월일 : 2023. 11. 28.
3. 점·사용의 목적 : 주택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50, 16㎡

(인근지번 : 화개면 덕은리 182)

5. 점·사용의 기간 : 2023.11. 30. ~ 2028.11.29.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김영숙
7. 점·사용 변경사항 : 점용 기간연장

하동군 공고 제2023 - 1466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건축 조례

2. 제안 이유 : 근거법령 및 인용 조문 개정

3. 주요 내용 : 근거법령 개정(건축법) 등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하동군 건축과 전화 880-2133, FAX 880-2109, e-mail) titica97@korea.kr로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 ---------- ---------- ---------- ---------- -----. ---------- ---------- ---------- ---------- ---------- ---------- ----------.
1.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 10미터 ---------- ----------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 10미터----------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하동군 공고 제2023 - 1496호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2. 제안 이유 :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반영

3. 주요 내용 :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전결 사항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하동군 행정과 전화 880-2163, FAX 880-2159, e-mail) korapa2k@korea.kr 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별표 1 ~ 5] 전결사항(**홈페이지 게재**)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군수・국・소・단・과장”을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장,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국・소・단・과장(읍・면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국・소장, 담당관・과장----------.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소・단・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 부군수,국・소장, 담당관, 과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군수의 전결사항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소・단・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다. 국・소장, 담당관, 과장----------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단・과장의 전결사항	4. 담당관, 과장--------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4조(전결 대상 사무) ① (생 략)	제4조(전결 대상 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이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	② ----------

군수 및 국・소・단・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생 략)	---- 국・소장, 담당관, 과장----------.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② (생략) ③ 다른 국・소・단・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단・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23-1469호

지적재조사 고전 시목노화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11 월 17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하동군 고전 시목노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91번지 일원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사업시행자: 하동군수
5. 사업기간: 2024. 1. ~ 2025. 12.
6.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고전 시목노화지구」 실시계획
   나. 열람장소: 하동군청 민원과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055-880-2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하동군청 민원과
   나. 전 화: 055-880-2083
   다. 팩 스: 055-880-2078
   라. 우 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하동군청, 민원과)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요약 →	지구지정신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동군 공고 제 2023 - 1470 호

지적재조사 악양 상신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11 월 17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하동군 악양 상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1번지 일원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사업시행자: 하동군수
5. 사업기간: 2024. 1. ~ 2025. 12.
6.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악양 상신지구」 실시계획
   나. 열람장소: 하동군청 민원과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055-880-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하동군청 민원과
   나. 전 화: 055-880-2123
   다. 팩 스: 055-880-2078
   라. 우 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하동군청, 민원과)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요약 →	지구지정신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동군 공고 제 2023 - 1482호

지적재조사 적량 동촌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11 월 20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하동군 적량 동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하동군 적량면 동리 898-4번지 일원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사업시행자: 하동군수
5. 사업기간: 2024. 1. ~ 2025. 12.
6.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적량 동촌지구」 실시계획
   나. 열람장소: 하동군청 민원과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055-880-2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하동군청 민원과
   나. 전 화: 055-880-2084
   다. 팩 스: 055-880-2078
   라. 우 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하동군청, 민원과)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요약 →	지구지정신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동군 공고 제2023-1484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화개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을 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지방하천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화개천	화개천 재해복구 사업	화개면 탑리 851	화개면 탑리 851	홍수방어 벽설치 L=448m	옹벽설치 L=448m	-고지 배수로 1식 -부대공 1식 등	2022.3	2024.12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토지조서의 내용

가. 토 지 : 붙임조서 참조**(홈페이지 게재)**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년 11월 21일 ~ 12월 6일

※ 열람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여부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확인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
(보상금 지급 :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조치)

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보상금 산정→보상협의→소유권 이전후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보상금 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055-880-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화개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에 따른 이의 신청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이의신청 내 용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 .

이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공고 제 2023-1503호

화개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나. 명 칭 : 화개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하동군수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하동군 화개면 탑리 일원

나. 면 적 : 4,057㎡

다. 규 모 : 홍수방어벽 설치 L=448m, 옹벽설치 3개소, 부대공 1식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일 : 2022년 3월

나. 준공 예정일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과

◦ 기 간 : 2023. 11. 24. ~ 2023. 12. 09.(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055-880-2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홈페이지 별첨). 1부.

하동군 공고 제2023 - 1512호

하동군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

1. 약정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2. 하동군 금고지정 내용

금고명	금융기관명	취 급 회 계	총점(평균)
제1금고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고향사랑, 통합재정안정화)	786.5점(98.3점)
제2금고	BNK경남은행 하동지점	■ 기금, 특별회계(발전소 주변지역)	739.7점(92.5점))